

【주제발표 2】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의 ‘공동체’ 개념: 무형유산의 보호사업과 등재의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⁷

박 상 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들어가는 말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그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부의 경우 그것들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는 과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즉, 무형유산의 개념, 성격, 의미의 규정부터 전승과 보호 등의 정책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관계는 매우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서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무형유산이 공동체의 삶과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는 무형유산의 연행과 전승을 포함한 보호 사업에 있어 공동체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보호사업과 등재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12회 나오고, 당 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총 42회나 등장하는데, 대부분, “공동체, 단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개인들(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licable, individuals)”이라는 구절로 쓰임을

⁷ 본 원고는 2015년 4월 10일 열리는 당진시 주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전북대학교 무형문화유산연구소 주관 ‘2015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용으로 작성된 초고이므로 발표자의 동의 없이 인용이나 발제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내용의 일부는 2014년 10월 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농악심포지엄에서 이미 발표된 것입니다.

볼 수 있다. 유형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사업의 근간이 되는 1972년의 세계유산협약 본문 자체에는 ‘공동체’ 개념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이 협약과 관련되어 열린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회의에서 유형유산에 있어서도 그 유산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관련성을 지니며 해당 유산을 문화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사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협약 당사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운영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 공동체의 개념, 범주, 이해관계는 반드시 국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민족 국가의 소수민족이 특정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동체의 주를 이룰 경우나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상이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무형유산 사업의 경우 토착적, 지역적, 소수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문화다양성과 소수자의 문화향유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세계유산 사업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무형유산 사업에서의 공동체 개념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2003년)에 나타난 ‘공동체’의 개념⁸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은 그보다 약 30년 앞선 세계유산협약(1972년)이 유산관련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이라는 비판의 내용을 성찰하고 그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Rudolff and Raymond, 2013). 이전의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무형유산협약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무형유산의 정의, 보호,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유산협약이 제정된 이후로 문화유산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거듭 이루어져서, 공동체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지키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고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⁸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2003, 문화재청 한글 번역본을 참조.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 토착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가 보다 중시되고 문화 다양성 보전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의 목록에 등재되는데 있어서도 국가의 입장과 유산관련 공동체의 이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내용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일부에서는 당 협약이 유산보다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협약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Rudolff and Raymond, 2013).

무형유산은 대체로 토착적 기반을 가지고 삶의 일부로 연행되어 온 것이며, 한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며 인류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무형유산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변화 속에서 그 의미와 기능이 축소될 위험이 크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이러한 소중한 유산이 보호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2003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그 서문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협약의 서문에, “……토착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보전, 유지,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더욱 풍부하게 함을 인정하면서……”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협약의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 자연과의 교류, 존재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킨다.

당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것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상호 존중에 대한 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 인권과 양립하여야 한다(협약 제 2 조).

위와 같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의 정의 자체부터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내려져 있다. 또한 당 협약은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관한 조항인 제 15 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보존 및 전승의 주체가 토착 공동체 및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이들의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나 전문가 주도의 보호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들을 인식하는 동시에 향후의 보호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 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30 개국의 비준을 시점으로 발효된 해인 2006 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의 공동체 참여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공동체의 정의, 인벤토리 작성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역할, 유네스코 목록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방안’ 등이 폭넓고도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⁹ 특히 이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협약에 나오는 ‘공동체, 집단, 개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였다.

‘공동체’란 무형유산을 연행하고, 전승하고, 그것과의 관련성에서 기인한, 공유된 역사적 관계로부터 나오는, 정체성과 연결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집단’이란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 또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무형유산의 수호자, 연행자, 또는 배우는 사람의 자격으로 유산의 연행, 재창조, 또는 전승에 있어 기술, 경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개인’이란 역시 한 집단 안에 있거나 여러 집단에 분산된 이들로, 특별한 기술, 지식, 경험이나 그 외의 특성을 지니고 현재와 미래의 무형유산의 연행, 재창조, 또는 전승에 있어 문화의 수호자, 연행자, 또는 배우는 사람의 자격으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무형유산의 의미부여, 전승, 보호, 그리고 유네스코 목록 등재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2003 년 무형유산 보호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3.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에 나타난 ‘공동체’의 개념¹⁰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

⁹ Report on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13–15 March 2006, Tokyo, Japan, organized by UNESCO and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¹⁰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ersion updated at the 5th General Assembly, June 2014), UNESCO.

하게 담은 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은 비교적 신생의 협약인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십여 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하며 거의 매년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4년 6월에 파리에서 열린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운영지침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 보호사업의 현 실정을 비교적 잘 반영하게 되었다. 총 5장, 169 조로 이루어진 운영지침에서 ‘제 3장 협약의 시행에 있어서의 참여’에 속하는 제 79 조부터 제 89 조까지의 항목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있어 ‘공동체’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79 조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기능적인, 상호 보완적인 협업 체제를 갖추도록 협약 당사국의 정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당 지침은, 여러 가지 맥락과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이 공동체의 참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의 실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자체의 역량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유네스코 목록에의 등재나, 필요한 경우 등재 철회에서도 공동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선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 정부는 공동체 등의 주체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 권장된다.

이상과 같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 내용을 볼 때, 협약의 운영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협약 당사국 정부에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은 당사국 정부의 역할을 매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며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무형유산의 규모와 범위에 관한 실무 그룹 회의¹¹

무형유산 관련 논의와 제도 운영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가 유산의 크기와 범

¹¹ Summary records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 (UNESCO Headquarters, 22 and 23 October 2012), reported at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ighth session, Baku, Azerbaijan, 2 to 7 December 2013.

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유산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끼리,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같은 유산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형유산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유네스코 목록 등재사업에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일본 내 다른 지역의 유산을 별개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가 유사성이 크다는 이유로 등재가 보류된 적이 있다. 무형유산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실무회의를 2012년 10월에 개최하였다.

이 실무회의에서 전체 토론을 위한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유산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동일한 유산으로 간주될 것인가, 하나의 유산이란 어느 정도의 크기와 범위를 가진 것인가의 최종 판단은 결국 유산과 관련된 당사자인 공동체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잣대란 없는 것이며 유산은 유사하기 보다는 ‘공유된(shared)’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유산의 크기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은 지지를 얻었다.¹² 예를 들어,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유산은 당연히 작은 규모와 범위를 가지며 해당 공동체의 크기도 작은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대표 목록의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들을 아우르는 큰 범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경향은 이러한 견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이미 등재된 자국의 유산과 유사한 일본 내 여러 지역의 유산들을 추가하여 다 지역 연속 유산으로 재신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일본 내 여러 지역의 등재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추가 유산의 등재도 비교적 수월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전문가회의에서 얻어진 결론들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다 국가 등재신청, 더 나아가 한국의 경우 남북한 유산의 공동 등재 사업 등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참고 사항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논의에 있어 무형유산의 해당 공동체의 의견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무형유산 등재와 전반적인 보호를 포함한 유네스코 사업의 시행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국 정부가 공동체에게 해당 유산이 어떤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¹² 2014년 5월에 간행된 비망록(Aide-Memoire)에도 이 회의의 결론이 반영되어, 그 내용이 제 53항에 정리되어 있다.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회의 참석 전문가들이 동의하였다.

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관련 참고자료의 공동체 관련 내용¹³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메모에 해당하는 비망록 (Aide-Memoire)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제 8차 정부간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토대로 유네스코 본부의 무형유산과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등재신청의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관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2014년 5월에 발간된 것으로 총 46쪽의 분량에 106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27항부터의 내용이 ‘가능한 최대한의 공동체 참여’에 관한 것인데, 문서는 먼저 이 대목이 당 협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임을 명시했다. 특히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은 비단 등재과정에서의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뿐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사업 전반에 있어서의 참여임도 명백히 하였다. 제 27항에서는 무형유산 보호협약에서 말하는 공동체란 그 유산의 연행, 전승 등의 역할로 유산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해당 유산을 감상하고,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유산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다. 또한, 제 30항에서는 공동체 내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고, 31항에서는 등재신청서에서 전체 관련 공동체 중 한정된 범주의 공동체만을 포함할 경우 그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32항과 33항에서는 공동체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 중 여성과 청년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청년층이 무형유산에 대해 관심이 부족할 경우 일부 등재신청서에서와 같이 청년들을 비난하는 듯 서술을 하기 보다는, 전승이 모든 세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보전계획을 수립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003년의 협약이 유산보다는 공동체가 더 강조된 협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협약과 운영지침에 많이 등장하는데 2014년 비망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제 58항과 제 59항에서는 유산의 기술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¹³ Nomination form, Aide-Memoire for Completing a Nomination, Instructions for Nomination File.

인 기능을 충분히 서술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한 번 유산이 공동체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 유산의 탈 맥락화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최대한의 참여는 그 자체로 유산보호의 길임을 81 항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제도의 입안에서부터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6. 제 8 차와 9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한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의견서 중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¹⁴

목록 등재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 사업의 기초와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중의 하나는 유산의 등재여부를 심사하는 보조 기구의 심사결과 발표에 포함된 종합평가 부분이다. 가장 최근의 정부간위원회 심사 결과는 2014년 11월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 9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2013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제 8 차 회의와 다음 해 9 차 회의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인류무형유산 등재심사의 경향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 보호사업의 방향성을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3년 제 8 차 정부 간 회의 심사 보조기구의 전체 심사평에서는, 여러 국가의 신청서들이 무형유산 등재에 있어 해당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서의 중요한 항목인 보호조치의 입안과 실행에서 공동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재 신청 결정과 준비 작업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신청서에서 분명히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사보조기구는 다시 한 번 공동체가 협약 정신 실행 의 중심에 서고 등재 과정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¹⁴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3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aku, Azerbaijan, December 4, 2013.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4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aris, France, November, 2014.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여기서의 공동체란 유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한된 범위의 공동체뿐만이 아닌, 그 유산을 감상하고, 관찰하고, 전승하는 데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유산이 정체성의 원천이 되고, 유산의 지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공동체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였다.

2014년 11월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 9차 정부간위원회의 심사보조기구 보고서에서는 특히 등재신청서 내용에서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것이 강조되었다. 유산과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기관들’이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동체가 단지 정보제공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다.

7. 나가는 말

본 발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형유산은 관련 공동체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논의되기 어렵다. 또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과 운영지침, 관련 회의의 결과들이 앞으로 공동체와 무형유산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예견되는 주변국과의 무형유산 등재 관련 조정의 문제, 향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 등재 신청 사업, 이 분야 남북협력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유산의 공동체가 유산의 유사성, 상이성, 연관성 등에 있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고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한 만능의 답이 공동체의 의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공동체는 그 내부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자체로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 의견이 단일한 것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동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의 보호 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를 배제하고는 행해지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박상미, “한국 농악의 사회문화적 의미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제도의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재단 주최 농악 심포지엄』, 2014.

(영문)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문화재청 누리집 한글 번역본), UNESCO 2003.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UNESCO and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13-15 March 2006, Tokyo, Japan.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ersion updated at the 5th General Assembly, June 2014), UNESCO.↳

Nomination form ICH-02,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or a possible inscription in 2016).

Instructions for completing form ICH-02 (for a possible inscription in 2016),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3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aku, Azerbaijan, December 4, 2013.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4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aris, France, November, 2014.

Aide-memoire for completing a Nomination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or 2015 and later Nominations,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 Division for Creativity, Section for Culture, July 2014.

Summary records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 (UNESCO Headquarters, 22 and 23 October 2012), reported at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ighth session, Baku, Azerbaijan, 2 to 7 December 2013.

Kim, Hyeonjeong, “The Importance of Communities being able to Provide Venues for

Folk Performances and the Effect: a Japanese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3, 2008, pp. 83–94.

Park, Soon Cheol, “ICHPEDIA, a case study in community engagement in the safeguarding of ICH on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9, 2014, pp. 69–82.

Rudolff, Britta and Susanne Raymond, “A Community Convention? An Analysis of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given under the 2003 Con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8, 2013, pp. 153–164.

Sarashima, Sumiko, “‘Community’ as a landscap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asho-fu in Kijoka, a Japanese Example of a Traditional Woven Textil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vol. 8, 2013, pp. 135–152.